Ⅲ. 감사 결과

1. 총 괄

감사결과 [표]와 같이 총 17건(처분내용 20건)의 위법·부당, 8건의 모범사항이 확인되었다.

[표] 감사결과 현황

(단위: 건)

합 계			변상명령(금액)	징계(인원)	시정(인원)	기관경고	기관주의	경고(인원)	주의(인원)	개선	권고	통 보					모범	현지조치
건수	금액(원)	인원										계	일반	시정완료(금액)	인사자료(인원)	비위(인원)		
20	-	-	-	-	-	-	2	-	-	-	5	13	13	-	-	-	8	3

감사결과 총평

□ ‘26년도 서해청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군산해경서의 안정적 조직운영 및 본청·지방청 추진정책 집행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감사를 실시하였다.

- 특히, **기능별 주요 정책 이행실태 및 취약요소** 등에 대해 점검하고, 기본업무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는 **업무처리 방법을 전수·개선**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 활성화 및 혁신 활동 확대”, “불법 외국어선 단속 대응 역량 강화”, “위험요인별 맞춤형 연안안전관리”** 등 주요업무 및 정책과제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었음

□ 그러나, **예산집행(민간 예인선 사용료 집행시 계약절차 미이행)** 및 **주요업무(범죄 피해자 피해전담경찰관 자격요건 미충족 등 관리 미흡)** 이행을 소홀히 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 또한, 바로·해(海) 분야별 자가진단을 실시, 결과에 따른 취약점 보완 및 개선사항 발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고 경비·구조안전·수사 등 11개 분야 11,626문항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번 종합감사 총 17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바로·해(海) 진단항목과 연계 여부를 점검한 결과 6건은 관련 규정 부재 등으로 진단항목과 미 연계하였고, 분야별 개선사항 도출 등을 통하여 진단체계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로 평가됨

2. 감사내용 및 처분사항

(1)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미실시 (통보)

□ 판단기준

○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70조(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 및 발생시 조치)에 의하면, 기관의 장은 「해양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에 따라 매년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제72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문제점

○ 이번 감사기간('26. 9. 7. ~ 9. 18.) 중 군산해양경찰서 공무직근로자 성희롱·괴롭힘 등 예방 교육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 1]과 같이 '성희롱·성폭력' 교육은 폭력예방교육과 연계하여 매년 1회 실시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의 경우 '25년 이후에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현황

구분	직종	성명	재직기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25년	환경미화직	***	'18. 7. 1 ~ 재직중	×	○
		***	'18. 7. 1 ~ 재직중	×	○
		***	'18. 7. 1 ~ 재직중	×	○
	청사방호직	***	'24. 7. 14 ~ '25.7.13.	×	○
		***	'25. 7. 14 ~ 재직중	×	○
		***	'25. 7. 14 ~ '26. 2. 19.	×	○
	사무직	***	'03. 12. 9 ~ 재직중	×	○
'26년	환경미화직	***	'18. 7. 1 ~ 재직중	△(예정)	○
		***	'18. 7. 1 ~ 재직중	△(예정)	○
		***	'18. 7. 1 ~ 재직중	△(예정)	○
	청사방호직	***	'25. 7. 14 ~ 재직중	△(예정)	○
		***	'26. 3. 27 ~ 재직중	△(예정)	○
	기술직	***	'26. 6. 15 ~ 재직중	△(예정)	○
	사무직	***	'03. 12. 9 ~ 재직중	△(예정)	○

□ 조치사항

○ **군산해양경찰서장(기획운영과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교육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통보)**

(2) 청사 방역·소독 관리 미흡 (통보)

□ 판단기준

○ 「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7조(청사시설 유지관리)에 따르면, 시설관리관은 시설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에 따른 청사 방역·소독을 년 6회 실시하여야 한다.

□ 문제점

○ 이번 감사기간('26. 9. 7. ~ 9. 18.) 중 군산해경서 청사시설 유지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 2]와 같이 년 5회 정기적으로 실시한 것을 확인하였다.

[표 2] 청사 방역·소독 현황

구분: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3개월)

연도	방역·소독 현황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4년	5회				4.14		6.18	7.23	8.19		10.28		
'25년	5회				4.14		6.23		8.27	9.16			12.1
'26년	3회					5.4		7.3	8.18				

자료: 군산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7조(청사시설 유지관리)에 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이라 한다.)」 제51조(소독 의무)에 따른 청사 방역·소독을 년 6회 실시하여야 하고, 「감염병예방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그런데, 군산해양경찰서에서는 4월부터 9월 사이('24년 4회, '25년 4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방역·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지만, 10월부터 다음 해 3월 사이('24년 10월부터 '25년 3월까지 1회, '25년 10월부터 '26년 4월까지 1회)에는 각 기간 중 1회만 실시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조치사항

○ **군산·목포·완도해양경찰서장(기획운영과장)**은 방역·소독횟수 주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위생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통보)**

(3) 함정·파출소 팀워크 훈련(필기) 평가 미흡 (통보)

□ 판단기준

○ “해양경찰 교육훈련 계획” 및 “함정 및 파출소 팀워크 훈련 평가 계획” 등에 따라 정기 인사 등 사유로 정원의 25% 이상이 교체(군산서의 경우 전부서 해당)되는 경우, 필기 평가(지형지물 숙지도 평가) 및 실기 평가(함정의 경우 ‘단정 양하강, 타선 소화’, 파출소의 경우 ‘지역특성화(익수) 및 지형지물 숙달 훈련, 연안구조정 운용술’)를 실시하고 있다.

□ 문제점

○ 이번 감사기간(‘26. 9. 7. ~ 9. 18.) 중 군산해양경찰서 함정·파출소 팀워크 훈련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점검한 결과, [표 3]과 같이 피평가자가 작성하는 지형지물 숙지도 평가지의 처리 결과가 미흡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3] ’25년 지형지물 숙지도 평가

연번	평가일자	소속	직급	직위	이름	점수	평가 내용	평가 결과(처리)
1	4. 16.	P-▽▽정	부장	경위	***	90	⑥전탐기지위치	오답 → 정답
2	4. 3.	▼▼▼▼함	팀원	경장	***	80	⑦관내주요사고	오답 → 정답
3	3. 28.	P-▼▼정	팀장	순경	***	30	③토속지명	정답 → 오답

자료: 군산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교육훈련계) 제출자료(지형지물 숙지도 평가) 재구성

○ 평가 처리(정답 및 오답)된 주요 내용으로, 1번의 경우 “전탐기지위치 표시(△)를 3개소로 중복 기재하였음에도 정답 처리”, 2번의 경우 “관내주요사고(☆)를 위치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정답 처리”, 3번의 경우 “토속지명을 정답으로 기재하였음에도 오답으로 처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오답으로 처리된 필기 평가 3건의 사항을 재반영하여 환산한 결과 순위 변동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 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되거나 답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정답이 처리될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으며, 평가 대상자 간 공정한 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채점 기준의 명확화 및 평가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 조치사항

○ **군산해양경찰서장(기획운영과장)**은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채점 기준 명확화 및 평가자에 대한 교육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통보)**

(4) 경비함정 전용부두 보안대책 미흡 (권고)

□ 판단기준

○ 군산해양경찰서 전용부두는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보안업무규정	**제34조(보호지역)** 제1항에 따르면 각급기관의 장과 관리기관 등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문서·자재·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보호지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누고, 제3항에서는 보호지역에 접근하거나 출입하려는 사람은 각급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 등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4조(업무담당)** 제1항에서는 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보안담당관(기획운영과장) 및 청사관리 담당자가 수행하고, 보호지역에 대한 운용 및 관리는 각 보호지역 분임보안담당관(함·정장)이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청「보안업무 가이드라인」Ⅳ. 시설보안에서는 보호지역(제한지역)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상시 출입자 명단을 비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42조(보안네트워크 장비 보안)** 제1항에 따르면, 각급기관의 장은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스위치·라우터 등 기관 정보통신망 구성 또는 사이버 보안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네트워크 장비를 설치·운용하고자 할 경우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 비(非)인가자의 무단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

□ 문제점

○ 이번 감사기간('26. 9. 7. ~ 9. 18.) 중 군산해양경찰서 전용부두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군산항 다목적관리부두(전용부두) 사용 부지 면적 요청('19.4.23.)에 대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호도 전용부두 접안·사용 예정으로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회시함에 따라, ◎◎◎호는 '22. 1. 28.부터 전용부두 대형 함정 계류 바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호 직원 46명에 대하여 상시 출입할 수 있도록 차량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전용부두에 외부인(◎◎◎호)의 상시출입자 46명에 대하여 군산해양경찰서장의 승인 절차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보안장비(내·외부망 네트워크 스위치)는 비(非)인가자로부터 장비·시설 훼손·망실 등을 예방하는 등 무단 사용이 제한되도록 적절한 보안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호 계류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해양경찰 보안장비에 외부인이 무단 접근·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보안대책 마련 필요성이 요구된다.

□ 조치사항

○ **군산해양경찰서장(기획운영과장)**은 전용부두 외부인 상시출입자에 대한 승인 절차 세부 지침을 수립·시행하고, 보안장비에 대한 비(非)인가자 무단 접근·사용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용부두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권고)**

(5) 조난선박 예인 절차 미흡 (통보)

□ 판단기준

○ 「수상구조법」 제21조(조난된 선박등의 예인 시 책임) 조난된 선박 등을 예인하는 자는 예인으로 인하여 조난된 선박 등이 파손되거나 멸실 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이 경우 조난된 선박 등을 예인하는 자는 피예인선의 선장이나 소유자에게 그 뜻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청 2025 조난선박 예인 가이드북」에는 “위험성이 없는 조종불능선은 선주·선장·보험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예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난 사고로 판단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인명구조를 실시하되, 예인은 가장 가까운 항구 또는 안전 해역까지 수행하며, 예인 고지 확인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는 녹취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문제점

○ 이번 감사기간(‘26. 9. 7. ~ 9. 18.) 중 「수상구조법」 제21조(조난된 선박등의 예인시 책임) 관련, 군산해양경찰서 경비함정 조난선박 예인 실적 및 예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표 4]와 같이 예인 절차(예인고지 확인서)가 미흡한 사실을 확인되었다.

[표 4] 경비함정 조종불능선 예인 현황

구 분	일 시	장 소	조난선박	내 용	비 고
☆☆☆파출소	‘24. 8. 2. 08:15	새만금 신치항	◐◐호	예인고지 확인서 미작성	
☆☆☆파출소	‘25. 9. 23. 17:48	횡경도 남동방	선명 무	예인고지 확인서 미보관	
★★파출소	‘24. 9. 14. 10:39	비응항	◑◑호	예인고지 확인서 미작성	
★★파출소	‘24. 9. 14. 14:46	비응항 남서 3해리	◑◑◐호	예인고지 확인서 미작성	
●●●●대	‘25. 8. 14. 16:06	군산항 42선석	◐◐◑◑호	예인고지 확인서 미작성	

자료: 군산해양경찰서 제출 자료 재구성

□ 조치사항

○ **군산해양경찰서장(경비구조과장)**은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선박 구조(예인) 업무시 「수상구조법」 및 「조난선박 예인 가이드북」에 따른 예인 절차와 방법 준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통보)**

(6) 고압가스 용기 재검사 기한 미준수 (기관주의) (통보)

□ 판단기준

○ 「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관리부서 및 운용부서의 의무) 제2항에 따르면 운용부서의 장은 보유중인 정수물품이 본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정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양경찰청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지침」 제9조(구급함정 등의 장비)에는 구급 함정 등에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고, 같은 법 제12조(소모품, 비품관리)에 따라 구급 함정 등의 소모품이나 비품은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에 따라 구조대·경비함정·파출소에서 사용 중인 고압용기(산소통, 공기통)는 최초 검사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 하거나, 손상의 발생, 합격표시의 훼손,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용기의 소유자가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재검사에 불합격한 용기나 특정설비는 파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검사 기한에 대하여 [표 5]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5]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주기

용기의 종류		신규검사 후 재검사 주기
이음매 없는 용기 또는 복합재료용기	500L 이상	5년 마다
	500L 미만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

자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재구성

□ 문제점

○ 이번 감사기간('26. 9. 7. ~ 9. 18.) 중 구조대·파출소·경비함정에서 운영 중인 고압용기 총 149개에 대하여 재검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재검사 기한이 도래되었으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고압가스 용기는 [표 3]과 같이 12개 부서에서 총 24개(산소통 9개, 공기통 15개) 재검사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조치사항

○ **군산해양경찰서장(경비구조과장)**은 고압용기 검사기한 준수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통보)**

(7) 동력구조보드 배터리 관리 방법 개선 필요 (권고)

□ 판단기준

○ 군산해양경찰서는 ‘파출소 임무수행장비 보급’ 및 ‘시범 운영’ 등을 통해 동력구조보드를 각 파출소에 배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동력구조보드 매뉴얼」에 따라, “안전을 위한 운행시 주의사항” 및 “배터리 팩 안전 및 취급 주의사항”, “컨트롤러 및 의류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 문제점

○ 「동력구조보드 매뉴얼」에 따르면 배터리 팩은 0℃ ~ 40℃의 환경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자동차 내부 또는 고온 다습한 곳이나 직사광선 및 화기 근처에 보관하지 않아야 함에도 [표 6]과 같이 서해청 소속서 일부 파출소에서는 연안구조정 내부에 배터리를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서해청 파출소 동력구조보드 배터리 팩 운영(보관) 현황

구분	군산서	목포서	완도서	여수서	부안서
보관	 ◦ ♣♣ – 연구정 1 – 파출소 1 ◦ ★★ – 연구정 1 – 파출소 1 ◦ ☆☆☆ – 연구정 2	 ◦ ⓐⓐ – 연구정 1 – 파출소 1 ◦ ⓑⓑ – 연구정 1 ◦ ⓒⓒ – 연구정 1 ◦ ⓓⓓ – 파출소 2 ◦ ⓔⓔ – 연구정 1 ◦ ⓕⓕ – 연구정 2 ◦ ⓖⓖ(X)	 ◦ ⓗⓗ – 연구정 1 – 파출소 1 ◦ ⓘⓘ – 연구정 1 – 파출소 1 ◦ ⓙⓙ – 연구정 1 – 파출소 1 ◦ ⓚⓚ – 연구정 2 ◦ ⓛⓛ – 연구정 2	 ◦ ⓜⓜ – 연구정 2 ◦ ⓝⓝ – 연구정 2 ◦ ⓞⓞⓞ – 연구정 2 ◦ ⓟⓟ – 연구정 2 ◦ ⓠⓠⓠⓠ – 연구정 2 ◦ ⓡⓡ – 연구정 2 ◦ ⓢⓢ – 연구정 2	 ◦ ⓣⓣ – 연구정 2 ◦ ⓤⓤ – 연구정 2 ◦ ⓥⓥ – 연구정 1
충전	파출소 내	연구정·파출소 내	파출소 내	파출소 내	파출소 내

자료: 서해청 소속서 제출 자료 재구성

□ 조치사항

○ **군산·목포·완도·여수·부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은 여름철 연구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과 외부의 복사열이 더해져 내부 온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음에 따라 연구정 내부온도 등을 감안하여 배터리 보관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8) 국기게양대 설치 방법 부적정 (권고)

□ **판단기준**

○ 「대한민국 국기법」 제10조(국기의 관리 등) 제1항에 따르면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1조(깃대의 설치방법)에 국기게양대 설치 방법을 정의하고 있다.

□ **문제점**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1조(깃대의 설치방법)에 따르면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국기게양대를 포함하여 게양대를 2개 설치하는 경우나 국기게양대와 유엔기·외국기를 상시 게양하기 위한 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 이와 관련 국기게양대가 3개인 경우,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되어야 함에도 각 게양대의 높이가 상이[1] 한 것을 확인하였다

- 또한, ★★파출소의 경우 '25. 11. 4. 준공된 신축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별관(창고)으로 사용 중인 있는 구(舊) 건물에 설치된 국기게양대에만 국기 및 관서기를 게양하고 있으며 신축 건물(現 ★★파출소)에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조치사항**

○ **군산해양경찰서장(기획운영과장, 해양안전과장)**은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는 부합하나 현실적인 여건(예산, 건물 구조 등)을 고려한 점진적 개선 및 향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시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권고)**

---

1) 국기게양대를 3개 설치하고 높이가 같은 건물**(6개소)**: 군산서, 파출소(♣♣, ☆☆☆), 출장소(㉮㉮㉮, ㉯㉯, ㉰㉰㉰)
국기게양대를 미설치한 건물**(2개소)**: ★★파출소, 함정승조원시설
국기게양대가 3개 설치되어 있고 높이가 다른 건물(3개소): ●●●●대(수양관), 출장소(㉱㉱㉱, ㉲㉲㉲)
국기게양대가 2개 설치되어 있는 건물: ㉳㉳㉳ 출장소
※ 개선 필요: 6개소(군산서, ★★파출소, ♣♣파출소, ☆☆☆파출소, ㉮㉮㉮출장소, ㉰㉰㉰출장소)

(9) 정보화 사업 전 보안대책 미수립 (통보)

□ 판단기준

○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제21조(보안성 검토) 제1항에 따르면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문제점

○ 이번 감사기간('26. 9. 7. ~ 9. 18.) 중 군산해양경찰서 CCTV 설치공사 보안성 검토 절차를 점검한 결과, [표 7]과 같이 "나나 및 라라라 CCTV 교체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안성 검토(보안대책) 절차가 생략된 것을 확인하였다.

[표 7] 나나 및 라라라출장소 CCTV 교체 공사 추진 경과

CCTV 교체 공사 의뢰	⇨	관리감독 철저 지시 하달	⇨	교체공사 변경 계약 체결	⇨	준공검사 결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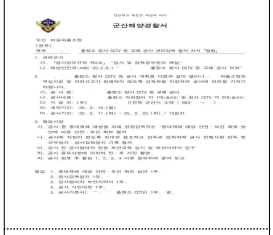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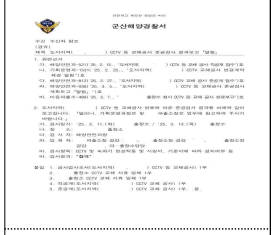
안전과-446('25.2.6)호		안전과-518('25.2.11)호		안전과-756('25.2.25)호		안전과-1151('25.3.14)호

자료: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공문 및 제출자료 재구성

○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제21조(보안성 검토) 제1항 및「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14조(검토 시기 및 절차)에 따르면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업 계획 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16조(검토 생략) 제1항 1의 나에 따라 "전화기·무전기·CCTV 등 통신·영상기기의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의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 절차의 이행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관련 매뉴얼·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는 등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에도 군산해양경찰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조치사항

○ **군산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안강화를 위해 정보화사업 수행 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인증 제품 확인 및 보안성 검토 생략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10)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 준수 미흡 (권고) (통보)

□ 판단기준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4조(위험성조사) 제1항에 의하면 해양경찰서장은 연안해역에서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 및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위험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같은 규정 제21조(연안해역 안전점검) 제2항 제2호에 따라 행락시기 이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합동으로 연 2회의 안전관리 실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또한, 제26조(연안사고 원인조사) 및 제27조(원인조사 결과보고)에 따라 관할 연안해역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원인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사고조사 결과를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문제점

○ 이번 감사기간('26. 9. 7. ~ 9. 18.) 중 '24년부터 '26년 8월 까지 연안해역 안전점검(정기점검) 실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연 2회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연 1회씩 실시하였고, '26. 3. 30. 비응항에서 추락·익수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연안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와 관련, 최근 2년 서해지방청 5개 소속서의 위험성 조사 및 연안해역 정기점검 실시 현황을 비교·확인한 결과 [표 8]과 같이 군산해양경찰서에서는 정기점검을 1회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관계기관 합동 연안해역 정기점검 현황

구분: '24년 ~ '25년

구 분			군산서	부안서	목포서	완도서	여수서
정기점검	'24년	횟수	1회	2회	2회	2회	2회
		날짜	4. 3.	4. 24. ~ 4. 25. 10. 21. ~ 10. 25.	5. 9. ~ 5. 20. 11. 13. ~ 11. 29.	4. 19. ~ 4. 25. 11. 12. ~ 11. 18.	5. 22. ~ 5. 24. 11. 20. ~ 11. 28.
	'25년	횟수	1회	2회	2회	2회	2회
		날짜	3. 24.	4. 30. ~ 5. 12. 11. 10. ~ 11. 11.	5. 12. ~ 5. 29. 10. 20. ~ 10. 24.	4. 22. ~ 4. 30. 11. 13. ~ 11. 20.	5. 20. ~ 5. 30. 11. 17. ~ 11. 26.

자료: 각 소속서 해양안전과 문서등록대장 재구성

□ 조치사항 군산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은

① 위험성 조사 및 정기점검의 결과가 형식적인 이행에 그치지 않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② 누락된 연안사고에 대한 원인조사 실시 및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통보)**

(11) 보안지원요원 사전교육 미흡 (통보)

□ 판단기준

○ 관련 지침 대외 공개 불가에 따른 비공개 처리(관련된 사항은 조치예정)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12) 지명수배자 호송 전 출장조사 및 자체 호송계획 수립 업무 미흡 (권고)

□ 판단기준

○ 해양경찰관서의 장은「(해양경찰청)범죄수사규칙(이하 "수사규칙" 이라 한다.)」제96조(지명수배자의 인수·호송 등) 제1항 따라 검거된 지명수배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호송을 위하여 미리 출장조사 및 자체호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문제점

○ 이번 감사기간('26. 9. 7. ~ 9. 18.) 중 '24년 1월 ~ '26년 8월 까지 군산해양경찰서 및 서해지방청 소속해경서(부안·목포·완도·여수)에서 수행한 지명수배자 호송 업무 현황을 확인한 결과, [표 10]과 같이 검거(호송)하기 전 출장 조사 및 자체 호송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는 등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표 10] 지명수배자 호송 전 자체호송계획 수립 여부(검거일 기준)

연번	관서명	지명수배자 검거 현황	호송계획 수립 여부 (수립 / 미수립 / 미대상)	비고
1	군산해양경찰서	2명(군산, 신안)	0명/ 1명 / 1명	현지조사 등
2	목포해양경찰서	12명(목포, 전주 등)	3명 / 7명 / 2명	구치소 내 조사 등
3	여수해양경찰서	1명(부안)	0명/ 0명 / 1명	현지조사 등

자료: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군산해양경찰서 수사과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사항

○ **군산·목포해양경찰서장(수사과장)**은 검거된 지명수배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호송을 위하여 지명수배자 검거 시 미리 출장조사 및 자체 호송계획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권고)**

(13) 범죄 피해자 전담경찰관 자격요건 미충족 등 관리 미흡 (통보)

□ 판단기준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훈령)」제11조(피해자전담경찰관) 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은 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수사과 소속으로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해야 하고, 같은 규칙 제40조(세부지침)에 따라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양경찰청(본청) 수사국에서는 '22년 3월「수사분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지침」을 수립하여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진 방안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 특히, 이 지침에는 범죄 등으로 피해가 심각한 피해자를 전담하여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해 각 해양경찰서마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경우, 피해자 상담 등 조력, 관련 시책 이행, 기능 간 협의 등 임무를 수행하므로 아래 [표 11]과 같이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명시하고 있다.

[표 11] 피해자 전담경찰관의 자격(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① 수사 경력 5년 이상인 자 ② 심리학 전공자 ③ 심리·상담분야 연구·경력자 ④ 수사부서 민원담당 임무(1년 이상) 종사 자(수사인권관, 수사심의담당자 포함)

자료:「수사분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지침」재구성

□ 문제점

○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26. 9. 7. ~ 9. 18.) 중 [표 12]와 같이 '24년 1월 ~ '26년 8월까지 군산해양경찰서에 지정된 피해자전담경찰관 중 지침 상 자격요건에 미충족되는 경찰관을 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 지정하는 등 지침 이행이 미흡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12] 군산해양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정 현황

구분	피해자전담 경찰관	자격 해당 여부			비고
		수사경력 5년 이상	심리학 전공자 심리상담분야 연구경력자	수사부서 민원담당 1년 이상	
'24년	순경 ****	X	X	O	피해상담사 3급 취득
'25년	경장 ***	X	X	X	피해상담사 3급 취득
'26년	경장 ***	X	X	X	피해상담사 3급 취득
	경사 ***	O	X	O	-
	경사 ***	O	X	O	
	경사 ***	O	X	X	

자료: 군산해양경찰서 수사과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사항

○ **군산해양경찰서장(수사과장)**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분야 피해자 보호·지원 지침 준수 및 전담 경찰관 재지정 바랍니다. **(통보)**

(14) 방제비용 산정위원회 운영 미흡 (통보)

□ 판단기준

○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제8조(방제비용 산정위원회 구성) 제1항 각 호에 따라 방제비용 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비용산정위원회를 두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장 포함 5 ~ 7명의 위원을 구성하고 그 중 외부위원은 과반수 이상 "보험·법무·방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일부 분야의 위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1개 또는 2개 분야의 근무 경력자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제9조(방제비용 산정위원회 운영)에 따라 위원장은 안건이 있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등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0조(방제비용 산정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따라 안건과 관련된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문제점

○ 이번 감사기간('26. 9. 7. ~ 9. 18.) 중 군산해경서 방제비용 산정위원회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❶외부위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제척여부를 사전에 검토함이 없이 외부위원 위촉과 방제비용 산정위원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정 과정에 대한 절차가 미흡하였고, ❷긴급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위원회 개최 전 통보기한(개최 7일 전 각 위원에게 일시·장소 등 통보)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❸심의 의결서 및 결과 문서의 위원회 개최·종료 시간, 최초 추산 금액 대비 위원회에서 최종 산정 금액 간 비교 내용을 미기재하는 등 심의·의결 과정 및 산정과 관련된 기재가 불충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조치사항

○ **군산해양경찰서장(해양오염방제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방제비용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외부위원 자격 충족여건 확인 절차 준수 및 관련 자료가 객관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15) 경비함정 크레인 와이어로프 안전검사 미흡 (통보)

□ 판단기준

○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15조(크레인 안전검사) 제1항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은 함정에 설치된 고속단정 양·하강 장치 및 크레인의 안전을 위하여 1년마다 와이어 로프의 인장강도와 마모율·부식·변형 여부를 검사하여 정비하거나 교체 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편람」 5-10-2(함정 와이어 로프)에서도 함정 탑재 장비 및 시설물에 사용하는 와이어 로프의 관리와 취급 미숙으로 함정 승조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장비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❶1년 1회씩 검사를 시행해야 하고, ❷검사의 종류는 정기검사와 임시검사가 있으며, ❸검사 시행처는 해경정비창 및 해군(정비창, 각 수리창) 자체 검사 또는 외부 검사 업체에서 시행하며, ❹와이어로프 검사 결과표를 해당함정에 발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문제점

○ 이번 감사기간('26. 9. 7. ~ 9. 18.) 중 군산해양경찰서 크레인 설치 경비함정 대상 와이어로프 안전 검사 실시 내역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25년도 군산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장 주관 함정 크레인 와이어 자체 점검·교체를 하였지만, 검사 항목 중 인장강도, 마모율 등은 전문 장비·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검사임에 따라 전문기관(정비창, 해군) 또는 검사 업체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였으나 [표 13]과 같이 9개의 크레인 와이어 로프에 대한 검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3] 경비함정 크레인 와이어로프 안전검사 현황

함정명	▼▼▼▼함	▼▼▽▽함	▽▽▼▼함	▼▽▽▼정
'24년	해경정비창	미흡: 3개(자체점검)	해군3함대	해군2함대
'25년	미흡: 4개(자체점검)	미흡: 1개(자체점검)	미흡: 1개(자체점검)	신품교체
'26년	진행중 및 검사기간 미도래			

□ 조치사항

○ **군산해양경찰서장(장비관리과장)**은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크레인 와이어 로프 안전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통보)**

(16) 민간 예인선 사용료 집행시 계약절차 미이행 (기관주의) (통보)

□ 판단기준

○ 국고의 부담이 되는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하고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위반됨이 없이 용역이 제공된 것을 확인한 후「국고금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가(代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 문제점

○ 이번 감사기간('26. 9. 7. ~ 9. 18.) 중 '24년 이후 민간 예인선 사용료 집행 현황을 확인한 결과 군산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에서는 예인업체(◇◇◇◇공단)로부터 비용을 월 단위로 청구받아 경리계에 지출 의뢰하여 일반지출 방법(500만원 초과 비용)으로 대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관서운영경비로 교부받아 지급(500만원 이하 비용)하였는데「국가계약법」제7조(계약의 방법)나 동법 제22조(단가계약)에 따른 사전 계약절차 없이 아래 [표 14]와 같이 매년 7,000만원 이상의 국고금을 집행하고 있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표 14] 군산해양경찰서 민간 예인선 사용료 집행 현황('24. 1. 1. ~ '26. 8. 25.)

년도	지급방법	건 명	금액	합계	업체명
'24년	출납	2024년 1월 민간예인선 사용료 집행 등 5건	21,293,950	78,862,140	◇◇◇◇ 관리공단
	일반지출	2023년 12월 민간예인선 사용료 지출 의뢰(12.5~12.19, 6회6척) 8건	57,568,190		
'25년	출납	2024년 12월 민간예인선 사용료 집행(3회 3척) 등 7건	23,719,880	73,514,750	◇◇◇◇ 관리공단
	일반지출	군산서 1월 민간예인선 사용료 집행 및 지출 의뢰 등 8건	46,794,870		
'26년	출납	2026년 2월 민간예인선 사용료 집행(3회 3척) 등 2건	9,837,720	48,358,470	◇◇◇◇ 관리공단
	일반지출	2026년 1월 민간예인선 사용료 집행 지출요청 등 4건	38,520,750		

□ 조치사항

○ **군산해양경찰서장(기획운영과장, 경비구조과장)**은 민간 예인선 사용 횟수의 유동적인 특성을 감안하여「국가계약법」에 따라 적합한 방식의 계약 체결을 통해, 예산이 계획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라며 예산이 임의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주의) (통보)**

(17) 취득 국유재산 등기·등록 기간 미준수 (통보)

□ 판단기준

○ 「국유재산법」 제14조(등기·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등기·등록 등)에 의하면 국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지체없이 등기·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제점

○ 이번 감사기간('26. 9. 7. ~ 9. 18.) 중 군산해양경찰서에서 ★★파출소 신축(증축)에 따른 청사 권리보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아래 [표 15]와 같이 군산시로부터 사용승인('25. 11. 25.)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준공확인('25. 11. 28.)을 받았으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소관에 속하게 된 날(사용승인이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등록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을 도과한 시점인 '26. 3. 16. 법원행정처에 소유권 보존을 위한 등기가 접수되었고 '26. 5. 29. 디-브레인(D-Brain)을 통한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함이 확인되었다.

[표 15] 군산해양경찰서 ★★파출소 권리보전 과정

건축주	지번 관련 주소	인허가 시기				등기일 (접수일)	국유재산[2] 대장 등재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	준공확인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해양경찰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 ** *동	'25.3.27	'25.4.10	**'25.11.25**	**'25.11.28**	**'26.3.16**	**'26.5.29**

자료: 군산시 등재 건축물대장 및 법원행정처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등 재구성

□ 조치사항

○ **군산해양경찰서장(기획운영과장)**은 향후 국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보전 기한을 준수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2) 기획운영과-5036('26.5.29., "국유재산(신.비응파출소) 취득에 따른 대장 등재 처리 계획 보고")호 참조